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6.23.(수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: 2021. 6. 3. 부평구청장

나. 회 부: 2021. 6. 4. 행정복지위원회 회부

다. 상 정 : 2021. 6.23. 제244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**[원안 가결]**

2. 제안설명 (요지)

가. 제안이유

○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시행되는 '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'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 법규의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함으로써, 행정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등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1조~ 제3조)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(2021. 6. 1. 시행)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(안 별표 3)
-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 수정사항 등 반영(안 별표 1~ 별표 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요지)

- 가.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시행되는 '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'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명 및 근거법규의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조례로,
- 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제1조(목적), 2조(위임사항), 제3조(감독)의 조문을 정비하고,
- 다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1. 6. 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[별표 3]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끝 부분에 신설하였으며, 그 밖에 [별표 1] "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", [별표 2]"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", [별표 3] "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"에 상위법규 개정에따른 위임사무명과 근거 법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로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.

4. 질의답변 (요약)

질문	답변
○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는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. 의회사무국, 보건소, 동장 이렇게 위임사무를 별도로 규정할 때에는 이 3개 기관의 독자성, 독립성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함. 보건소나 동 같은 경우는 불용물품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, 의회사무국만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바람.	○ 검토해보겠음. 현재 의회사무국은 다른 본청의 부서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에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.
○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되어 6.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업무처리에 어려움은 없는지.	○ 초기 시행시기라 여러 가지 문의사항은 있음. 시행전에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이 토지정보과 에서 업무 처리요령 등 사전교육도 받았음.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안내, 신고유도하고 접수받는 사항이 되겠음.

5. 토 론 ○ 김환연 위원 "원안 동의"	
6. 심사결과 ○ 만장일치 "원안 가결"	